

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시(제13조제1항 관련)

1.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지도형



2. 제도법

가. 도형표시

- 1) 표지도형의 가로 길이(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: W)를 기준으로 세로 길이는 $0.95 \times W$ 의 비율로 한다.
- 2) 표지도형의 흰색모양과 바깥 테두리(좌·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)의 간격은 $0.1 \times W$ 로 한다.
- 3) 표지도형의 흰색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$0.55 \times W$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,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$0.75 \times W$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.

나. 표지도형의 한글 및 영문 글자는 고딕체로 하고, 글자 크기는 표지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.

다. 표지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,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, 빨간색 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.

라. 표지도형 내부의 “GAP” 및 “(우수관리인증)”의 글자 색상은 표지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, 하단의 “농림축산식품부”와 “MAFRA KOREA”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.

마. 배색 비율은 녹색 C80+Y100, 파란색 C100+M70, 빨간색 M100+Y100+K10, 검은색 B100으로 한다.

바. 표지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.

사. 표지도형 밑에 인증번호 또는 우수관리시설지정번호를 표시한다.

3. 표시사항

가. 표지



인증번호(또는 우수관리시설지정번호): Certificate Number:

나. 표시항목: 산지(시·도, 시·군·구), 품목(품종), 중량·개수, 생산연도, 생산자(생산자집단명) 또는 우수관리시설명

4. 표시방법

- 가. 크기: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다.
- 나. 위치: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, 포장재 구조상 옆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.
- 다. 표지 및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.
- 라. 포장하지 않고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지와 표시사항을 인쇄하거나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농산물우수관리의 표지만 표시할 수 있다.
- 마. 수출용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요구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.
- 바. 제3호나목의 표시항목 중 표준규격, 지리적표시 등 다른 규정에 따라 표시하고 있는 사항은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.

5. 표시내용

- 가. 표지: 표지크기는 포장재에 맞출 수 있으나, 표지형태 및 글자표기는 변형할 수 없다.
- 나. 산지: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으로 시·도명이나 시·군·구명 등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적는다.
- 다. 품목(품종): 「식물신품종 보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종을 이 규칙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표시한다.
- 라. 중량·개수: 포장단위의 실중량이나 개수
- 마. 삭제 <2014.9.30.>
- 바. 생산연도(쌀과 현미만 해당하며 「양곡관리법」 제20조의2에 따라 표시한다)
- 사. 우수관리시설명(우수관리시설을 거치는 경우만 해당한다): 대표자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작업장 소재지
- 아. 생산자(생산자집단명): 생산자나 조직명, 주소, 전화번호
- 자. 삭제 <2014.9.30.>